

[별표 1]

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(제4조 관련)

1.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액체 저장시설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.

가.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

구분	시설용량	갑종 보호대상	을종 보호대상
인화성가스	1만㎥ 이하	17m	12m
	1만㎥ 초과~2만㎥ 이하	21m	14m
	2만㎥ 초과~3만㎥ 이하	24m	16m
	3만㎥ 초과~4만㎥ 이하	27m	18m
	4만㎥ 초과~5만㎥ 이하	30m	20m
	5만㎥ 초과~99만㎥ 이하	30m [저온저장탱크는 $3/25\sqrt{(X+10,000)}$]	20m [저온저장탱크는 $2/25\sqrt{(X+10,000)}$]
	99만㎥ 초과	30m (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)	20m [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]
인화성액체	-	30m	10m

비고

1. 인화성가스란 섭씨 20도, 표준압력(101.3kPa)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써 규칙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인화성가스 구분1, 구분2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.
2. X는 해당 취급시설의 최대 취급량을 말하며,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m^3 ,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kg으로 한다.
3.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℃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, 규칙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인화성액체 구분1, 구분2,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.

2. 급성 흡입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·설비는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.

구분	시설용량	갑종 보호대상	을종 보호대상
가스	1만㎥ 이하	17m	12m
	1만㎥ 초과~2만㎥ 이하	21m	14m
	2만㎥ 초과~3만㎥ 이하	24m	16m
	3만㎥ 초과~4만㎥ 이하	27m	18m
	4만㎥ 초과	30m	20m
휘발성 액체	-	17m	12m

비고

1. 급성 흡입 독성물질이란 흡입 노출되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구분 1, 구분2,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.
2. 가스란 끓는점이 20℃이하인 물질을 말한다.
3. 휘발성 액체란 20℃에서 증기압이 26.7kPa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.

3.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성을 우선적용한다.